

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1989. 11. 13 조례 제 570호
개정 1991. 5. 4 조례 제 676호
2004. 12. 30 조례 제1373호
2007. 3. 28 조례 제1532호
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 2020. 3. 25 조례 제261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, 보관 등에 관하여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3. 28>

제2조(차량의 견인)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광명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28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30>

제3조(소요비용)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08. 6. 16>

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4조(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)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,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- 제5조(대행비용의 지급)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,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28>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1. 5. 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12. 30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보관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부칙 <2007. 3. 28 조례 제15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61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 〈개정 2020. 3. 25〉

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(제3조제1항 관련)

○ 견인료 및 보관료

구 분 대상차량	견 인 료		보 관 료
	기본요금 (편도 5킬로미터까지)	추가요금 (매 킬로미터 증가시)	
2.5톤미만	30,000원	1,000원	30분당 500원(단,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)
2.5톤이상 6.5톤미만	35,000원	1,400원	
6.5톤이상	60,000원	2,500원	

[별지 서식] 〈개정 2008. 6. 16〉

소요비용 납부고지서				
제 호	년도		회계	
세입과목				
납 부 의 무 자	주 소			
	성 명			
견 인	일 시			
	장 소			
소요비용	견인료		보관료	
내 역	원		원	
납부기한		납부장소		
납부금액	원			
부과근거 : 「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				

납부필통지서				
제 호	년도		회계	
세입과목				
납 부 의 무 자	주 소			
	성 명			
견 인	일 시			
	장 소			
소요비용	견인료		보관료	
내 역	원		원	
납부기한		납부장소		
납부금액	원			
부과근거 : 「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				

영 수 증				
제 호	년도		회계	
세입과목				
납 부 의 무 자	주 소			
	성 명			
견 인	일 시			
	장 소			
소요비용	견인료		보관료	
내 역	원		원	
납부기한		납부장소		
납부금액	원			
부과근거 : 「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(인)				